

01 개인기부자

개인(비사업자/근로소득자)의 경우, 근로소득금액의 100%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세액 공제율은 15%이며, 1,000만원 초과분은 30%가 적용됩니다.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.

[예시]
연봉이 1억원인 직장인 A씨가 **한국문화예술회원회에 3,000만원을 기부**하였을 때 **기부에 따른 세금절감 은 얼마나 될까요?**

STEP 1.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

기부인정 한도액은 8,525만원으로, A씨가 기부한 3,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

한도액	
근로소득금액 100% = 총급여-근로소득공제 = 1억원- 1,200만원+(1억원-4,500만원)×5%} = 8,525만원	
근로소득공제	
총급여액	공제액
500만원 이하	총급여액의 70%
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	350만원+500만원 초과액의 40%
1,5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	750만원+1,500만원 초과액의 15%
4,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	1,200만원+4,500만원 초과액의 5%
1억원 초과	1,475만원+1억원 초과액의 2%
*비교	
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인정 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의 30%이므로, A씨가 기부한 3,000만원 중 25,575,000원 인정	

STEP 2. 기부금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

2,000만원×15%+(3,000만원-2,000만원)×30% = 600만원

세액공제율은 2,000만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뉘므로, 계산시 유의
·2,000만원 이하 기부금 : 세액공제율 15%
·2,000만원 초과분 : 세액공제율 30% * 2019년부터는 1,000만원 이하 15%, 초과 30% 적용
*비교
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
2,000만원×15%+(25,575,000원-2,000만원)×30% = 4,672,500원

STEP 3. 절세액 확인

→ 3,000만원 기부시, 660만원 소득세 감소(600만원+주민세 10% 가산)

*비교
지정기부금단체 기부 시, 5,139,750원 소득세 감소(4,672,500원+주민세 10% 가산)

02 개인사업자

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100% 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.* 지정기부금단체는 30% 한도 인정

[예시]
총 수입액이 1억원, 필요경비 3,000만원인 B씨가 **한국문화예술회원회에 3,000만원을 기부**하였을 때, **기 부에 따른 세금절감은 얼마나 될까요?**

STEP 1.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

기부인정 한도액은 7,000만원으로, B씨가 기부한 3,000만원 전액 경비 산입 또는 공제 가능

한도액
사업소득금액의 100% = 총수입액-필요경비(1억원-3,000만원 = 7,000만원)
*비교
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30%이므로, B씨가 기부한 3,000만원 중 2,100만원 인정

STEP 2. 기부금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

72만원+(4,000만원-1,200만원)×15% = 492만원

과세표준		
총수입액-기부금-필요경비(1억원-3,000만원-3,000만원 = 4,000만원)		
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		
과세표준	세율(%)	산출세액
1,200만원 이하	6%	과세표준의 6%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5%	72만원+1,200만원 초과액의 15%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4%	582만원+4,600만원 초과액의 24%
8,800만원 초과 1억 5,000만원 이하	35%	1,590만원+8,800만원 초과액의 35%
1억 5,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8%	3,760만원+1억 5,000만원 초과액의 38%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0%	9,460만원+3억 초과액의 40%
5억원 초과	42%	17,460만원+5억 초과액의 42%
*비교		
기부금이 없는 경우		
소득세 : 582만원+(7,000만원-4,600만원)×24% = 1,158만원 *과세표준 : 1억원-3,000만원 = 7,000만원		
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		
소득세 : 582만원+(4,900만원-4,600만원)×24% = 654만원		
*과세표준 : 1억원-2,100만원-3,000만원 = 4,900만원		

STEP 3. 절세액 확인

1,158만원(기부금이 없는 경우 소득세)-492만원(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세액) = 666만원

→ 3,000만원 기부 시, 732만 6천원 소득세 감소(666만원+주민세 10%가산)

*비교
지정기부금단체 기부 시, 554만 4천원 소득세 감소(5,040,000원+주민세 10% 가산)

03 법인사업자

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50%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,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

*지정기부금단체는 10% 한도 인정

[예시]
기준소득금액이 12억원인 법인이 **한국문화예술회원회에 2억원을 기부**했을 때 **기부에 따른 세금절감은 얼마나 될까요? (이월결손금 '0'원으로 가정)**

STEP 1.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

기부인정 한도액은 6억원으로, 법인이 기부한 2억원 전액 경비 산입 인정

한도액
기준소득금액의 50% = 12억원×50% = 6억원
·기준소득금액 = 차가감소득금액+기부금-이월결손금
·차가감소득금액 = 법인세법상 총수입금액-총필요경비(기부금을 포함한 금액)
*비교
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인정 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의 10%이므로, 법인이 기부한 2억 중 1억 2,000만원 인정

STEP 2. 기부금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

2,000만원+(10억원-2억원)×20% = 1억 8,000만원

과세표준		
총수입액-기부금-필요경비(12억원-2억원 = 10억원)		
법인과세표준 세율		
과세표준	세율(%)	산출세액
2억원 이하	10%	과세표준의 10%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0%	2,000만원+2억원 초과액의 20%
200억원 초과 3,000억원 이하	22%	39억 8,000만원+200억원 초과액의 22%
3,000억원 초과	25%	655억 8,000만원+3,000억원 초과액의 25%
*비교		
기부금이 없는 경우		
법인세 : 2,000만원+(12억원-2억원)×20% = 2억 2,000만원 *과세표준 : 12억원		
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		
소득세 : 2,000만원+(10억 8,000만원-2억원)×20% = 1억 9,600만원		
*과세표준 : 12억원-1억 2,000만원 = 10억 8,000만원		

STEP 3. 절세액 확인

2억 2,000만원(기부금이 없는 경우 법인세)-1억 8,000만원(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세액) = 4,000만원

→ 2억원 기부 시, 4,400만원 법인세 감소(4천만원+주민세 10% 가산)

*비교
지정기부금단체 기부 시, 2,640만원 법인세 감소(2,400만원+주민세 10% 가산)